

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9년 7월 2일
- 회부일자 : 2009년 7월 8일

3. 제안이유

-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“충북 문화재단”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.

4. 주요골자

- 재단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,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, 문화예술활동 지원, 문화예술 교육·연구 등 지역 문화 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토록 함.(제2조, 제4조)
-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“충북문화재단기금”을 설치하도록 함.(제7조)
- 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할 수 있으며, 도지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8조)
- 「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에 의한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충북문화재단기금으로 승계함.(부칙 제2조)

5. 검토의견

-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을 검토한바
-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“충북 문화재단”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
-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나 목적에 대하여는 다른 이견이 없으며 동 조

례에 의한 재단이 설립되어 운영하는 과정을 주요업무보고 청취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재단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통제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며

- 기 운영중인 타시도의 운영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우리 충북의 문화 환경에 맞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

※ 참고사항 : 타시도의 문화재단 설립현황 및 기금조성 목표액

1. 경기문화재단 : 1997. 4. 30, 1,000억
2. 강원문화재단 : 1999. 12. 28, 200억
3. 제주문화예술재단 : 2000. 12. 31, 300억
4. 서울문화재단 : 2004. 3. 15, 2,000억
5.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: 2004. 12. 1, 300억
6. 인천문화재단 : 2004. 12. 10, 1,000억
7. 부산문화재단 : 2009. 1. 20, 500억
8. 대구문화재단 : 2009. 4. 2, 660억
9. 대전문화재단 : 2009. 10.(예정), 500억
10. 경남문화재단 : 2010. 1.(예정), 1,000억